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의자 : 김태년 · 남인순 · 이재관
김한규 · 진선미 · 정준호
홍기원 · 서영석 · 이강일
박홍배 · 김영진 · 진성준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에서 실시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에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, 학교문화예술교육은 교육부와 시·도교육청의 무관심 등으로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등이 부실한 실정임.

이에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고,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

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1항 후단,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).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호의2에 관한 계획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되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계획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8의2.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·개발 및 보급지원

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18조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 ① · ②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	<p><u>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· 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</p> <p>제18조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</p>
---	--